

1. 개정이유

향로표지를 디지털정보 중심으로 지능정보화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향로표지법」이 개정(법률 제18700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향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구축에 따른 향로표지 기반 정보의 제공, 향로표지정보 서비스센터 지정·운영, 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향로표지의 고시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의 위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 신설(안 제13조제2항)
- 나. 사설향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가중처분을 위한 기간계산의 기산시점을 “요청한 날”에서 “처분을 받은 날”로 명확히 정함(안 제18조제2항, 별표2)
- 다.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중 대표자 변경 시 위탁관리업을 등록 때와 같이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보완(안 제20조)
- 라. 향로표지 장비·용품 정기검사 신청 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보완(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
- 마. 향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구축에 따른 향로표지 기반 정보의 제공, 향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 지정·운영, 정보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40조제6항, 별지 제26호의 2서식)

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이전·철거 명령, 손실보상 등 관련 사무를 현장여건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 관련 규정 개선(안 제41조제1항)

사.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가중처분 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1년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등주”를 “등주(燈柱)”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LORAN)”를 “(LORAN, R-Mode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계선표지(繫船標識)

제3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를 “각 호를 포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종류·충톤수·만재흘수”를 “종류·충톤수·만재흘수(滿載吃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맞는지”를 “적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류 및 그 종류별로”를 “종류별”로, “분석을 하여야 한다”를 “분석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명(吹鳴)주기, 음달거리(音達距離), 음의”를 “소리 울림 주기, 소리의 도달거리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공법”을 “공사 방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산정하여야”를 “산정해야”로 한다.

제12조제5호 중 “취명주기 및 리듬”을 “소리 울림 주기”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고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장비·용품 검사결과서”를 “장비·용품등 검사결과서”로, “장비·용품을”을 “장비·용품등을”로, “등명기에 대해서”를 “등명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비·용품”을 “장비·용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되면”을 “인정하면”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발견하였을”을 “발견했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비·용품의”를 “장비·용품등의”로, “장비·용품을”을 “장비·용품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요청”을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되도록 하여야”를 “되도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로, “확인하여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적합한지 여부”를 “적합한지”로, “인정되면”을 “인정하면”으로, “등재”를 “등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재하여야”를 “등록해야”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을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설항로표지관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를 “법인의 대표자가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변경하려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사설항로표지관리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거”를 “않거”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등재”를 “등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21조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23조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록·관리하여야”를 “기록·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지 받았”을 “통지받았”으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개발 및 검사”를 “항로표지 장비·용품등의 개발 및 검사”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개발 등)”을 “(항로표지 장비·용품등의 연구·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비·용품을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하려는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장비·용품등을 연구·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항로표지 장비·용품등”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비·용품”을 “장비·용품등”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비·용품의”를 “장비·용품등의”로, “장비·용품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를 “장비·용품등을 지정하여 공고해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검사 대상 등)”을 “(항로표지 장비·용품등의 검사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장비·용품”을 각각 “장비·용품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비·용품에 대하여”를 “장비·용품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비·용품을 개조”를 “장비·용품등을 개조”로, “장비·용품을 사용하기”를 “장비·용품등을 사용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장비·용품”을 각각 “장비·용품등”으로, 같은 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의 절차 등)”을 “(항로표지 장비·용품등 검사의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비·용품의”를 “장비·용품등의”로, “장비·용품 검사신청서”를 “장비·용품등 검사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검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 중 “장비·용품을”을 “장비·용품등을”로, “장비·용품 검사결과서”를 “장비·용품등 검사결과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비·용품”을 “장비·용품등”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의 유효기간)”을 “(항로표지 장비·용품등 검사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비·용품”을 “장비·용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산한다”를 “계산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장비·용품”을 “장비·용품등”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재지정에 관하여는”을 “재지정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를 “검사대행기관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3조 중 “대하여 국유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장비·용품”을 “장비·용품등”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비·용품”을 각각 “장비·용품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것으로 검사업무 실적보서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장의2(제35조의2 및 제3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제35조의2(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①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항로표지기반 정보제공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정보제공 여부 및 정보제공 조건, 제공 기간, 수수료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의3(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 지정·운영) ① 법 제43조의3제5항의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둔다

② 법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센터는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가공·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항로표지기반 정보에 관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③ 센터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철거·이설·개수·보수·대여하는”을 “철거·이설(移設)·개수·보수·대여하는”으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각각 “보고해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재 사항이”를 “기록 사항이”로, “기재 사항

의”를 “기록 사항의”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장비·용품 검사에 소요되는”을 “장비·용품등 검사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승인하여야”를 “승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다만, 해당 정보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1호, 제13호, 제22호 및 제29호”를 “영 제22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요청의 세부기준”을 “처분의 세부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요청기준”을 “처분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요청”을 각각 “처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요청을”을 “처분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의 제목란 중 “업무정지 요청기준”을 “업무정지 처분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 중 “(다목에 따른)”을 “(가중처분 적용)”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의 결격 사유”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신청서”를 “항로표지 장비·용품등 검사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결과서”를 “항로표지 장비·용품등 검사결과서”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장비·용품”을 각각 “장비·용품등”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장비·용품”을 각각 “장비·용품등”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제목 중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항로표지 장비·용품등”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장비·용품”을 “장비·용품등”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제목 중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항로표지 장비·용품등”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장비·용품”을 “장비·용품등”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위탁관리업자 성명	상호	위탁관리업 등록번호	
	위탁관리대상 항로표지	종류	수량	
	관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리자 및 시설장비	성명	근무지역(시도)	자격종류	자격증번호
	총전실 연면적(㎡)	구조	소재지	소유 또는 임차
	선박명	선박번호	총톤수	소유 또는 임차
	승선정원	보험 또는공제가입 여부, 상품명	가입기간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측정장비 및 충전장비	규격	수량	장비번호

「항로표지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위탁관리 대상 항로표지에 대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	수수료 없음
	2.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3. 「항로표지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증서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항로표지기반 정보 제공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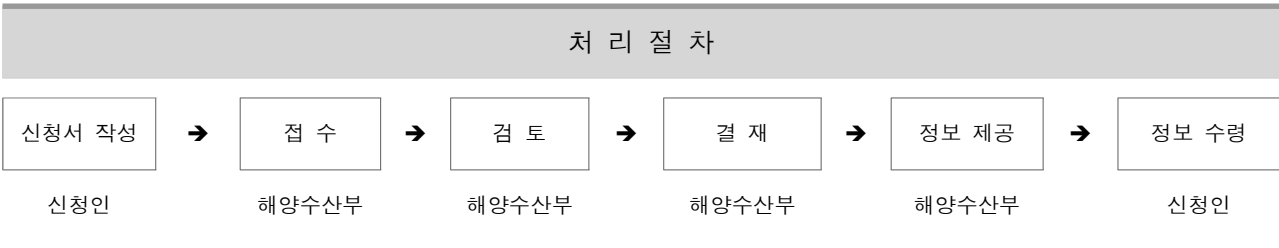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 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팩스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주소)		
정보내용			
이용목적	[]연구개발 []통계작성 []사업활용 []기타 ()		
제공형태	[]전자파일 []기타 ()		
정보 관리계획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전자우편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사항 없음	
	감면사유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비영리 목적으로 활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고,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항로표지법」 제43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항로표지의 종류) ①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항로표지의 종류) ① ----- ----- ----- -----.
1. 광파(光波)표지: 유인등대, 무인등대, 등표(燈標), 도등(導燈), 조사등(照射燈), 지향등(指向燈), <u>등주</u> , 교량등, 통항 신호등, 등부표(燈浮標), 고정 부표(spar buoy), 대형 등부표(LANBY) 및 등선(燈船)	1. ----- ----- ----- ----- <u>등주(燈柱)</u> ----- -----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4. 전파표지: 레이더 비콘(radar beacon),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지상파항법시스템(<u>LORAN</u>)	4. ----- ----- ----- -----(<u>LORAN, R-Mode 등</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로표지는 그 기능 및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수항로표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②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계선표지</u>	4. <u>계선표지(繫船標識)</u>
5. ~ 14. (생략)	5. ~ 14. (현행과 같음)

제3조(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시행계획(이하 “항로표지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항로표지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

----- 수립해야 -----

-- 통보해야 ----.

② -----

----- 각 호를

포함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③ -----

----- 추

진해야 -----

----- 제출해야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변경된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지
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4조(항로표지의 설치·관리) 해
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
능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생략)
2. 선박 통항량과 통항선박 중
가장 큰 선박의 종류·총톤수
·만재흘수 등 해상교통 상황
3. (생략)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
에 맞는지 여부
5. (생략)

제5조(항로표지 기능의 측정·분
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항로표지의 종류 및 그 종류
별로 측정·분석항목에 대하여
4년마다 측정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음파표지: 취명(吹鳴)주기, 음

----- 통보
해야 -----.

제4조(항로표지의 설치·관리) --

----- 고려해야 -----.

1. (현행과 같음)
2. -----
----- 종류·총톤수
·만재흘수(滿載吃水) -----
3. (현행과 같음)
4. -----
-- 적합 ----
5. (현행과 같음)

제5조(항로표지 기능의 측정·분
석 등) ① -----

----- 종류별 -----

----- 분석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소리 울림 주기, 소

달거리(音達距離), 음의 세기 등

3. (생략)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고 제30조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등명기(燈明器)를 사용하는 광과표지는 측정·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생략)

제8조(수중암초의 제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를 제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생략)

2. 안전성, 경제성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공법을 선정할 것

3.·4. (생략)

제11조(침선표지 설치·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설치

리의 도달거리 및 -----

--

3. (현행과 같음)

② -----

----- 않은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수중암초의 제거 등) ----

1. (현행과 같음)

2. -----

----- 공사 방

법-----

3.·4. (현행과 같음)

제11조(침선표지 설치·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등) ① -----

· 관리하는 경우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침선표지 설치·관리 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항로표지의 현황) 법 제16조에서 “위치·명칭·등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현황”이란 항로표지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5. 음파표지: 명칭, 위치, 종류, 취명주기 및 리듬

6.·7. (생략)

제13조(항로표지의 고시) (생략)

<신설>

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양도 신고) ① 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를 양도한 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

----- 산정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항로표지의 현황) -----

-----.

1. ~ 4. (현행과 같음)

5. -----
소리 울림 주기

6.·7. (현행과 같음)

제13조(항로표지의 고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고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양도 신고) ① -----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 신고)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는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던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

----- 제출
해야 -----.

1.·2. (현행과 같음)

② -----

----- 확인해야
-----.

제15조(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 신고)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16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17조(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① 법 제20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 제출해야 -----.

1. · 2.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① -----

----- 제출해야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출해야 ----
-----.

1. · 2.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① -----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결과서(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대상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사용한 경우만 해당하며, 등명기에 대해서는 광도 산출서를 포함한다)

2. (생략)

3. 예비용 항로표지 장비·용품 현황

4. (생략)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2일 이내에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출해야 ----. -----

----- 첨부해야 ----
--.

1. -----
장비·용품등 검사결과서---

----- 장비·용품등을 -
----- 등명기

2. (현행과 같음)

3. ----- 장비·용품
등 -----
--

4. (현행과 같음)

② -----

----- 인정
하면 -----

-----.

제18조(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
리)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7조에 따라 항로표지
의 소등(消燈)·유실(遺失)·
침몰·무너짐·위치이동 등의
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
할 것

3. (생략)

4.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
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용품
의 경우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사용할 것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설
항로표지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
람(이하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정지 요
청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
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2
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제18조(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
리)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발견했을 -----

3. (현행과 같음)

4. -----
----- 장비·용품
등의 -----

장비·용품을 -----

② -----

----- 처
분-----
-----.

③ -----

관리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게 시정조치의 요청 내용, 요청 사유 및 이의제기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19조(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및 신청인이 법 제21조 각 호 또는 제23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
----- 되도록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①

----- 제출해야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인이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등재하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 확인해야 한

다. -----
----- 않는 -----

----- 해야 -----.

③ -----

----- 적합한지 -----
----- 인정하면 -----

----- 등록 -----

발급해야 -----.

않다고 -----

----- 해야 -----.

④ -----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 ① (생략)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변경하려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하려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법 제2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사설항로표

----- 등록해야 -----.

⑤ -----
----- 공고
해야 -----.

제20조(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출해야 -----
--.

1. 2. (현행과 같음)

3. -----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설항로표지관리원-----

③ -----

-- 법인의 대표자가 법 제23조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변경하려는 사설항로

지관리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
 의하지 아니하거나 사설항로표
 지관리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
 사항 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13조
 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설항로표
 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등재하
 고 신청인에게 변경사항이 반영
 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설항로
 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관리업 등록증의 재발
 급) 위탁관리업자는 제19조제3
 항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발

표지관리원이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

-- 확인해야 ----.

---- 않거-----

않는 -----

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④ -----

----- 등록---

----- 발급

해야 ----.

제21조(위탁관리업 등록증의 재발
 급) -----

급받은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실항로 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훼손된 등록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생략)

③ (생략)

제23조(영업 개시 등의 신고) 법 제25조에 따라 업무의 개시·휴

----- 제출해야
-----.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① -----

----- 제출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확인해야 -----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영업 개시 등의 신고) ---

업·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생략)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명령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탁관리업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그 항로표지의 위탁관리업자가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 제출해야 -----.

제24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고해야 -----.

③ -----

----- 기록·관리해야 -----.

④ -----

----- 통지받았-----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위탁관리업자의 등록취소나 업무의 정지 등을 이유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항로표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원상복구의 방법 등) ① (생략)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가 원상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6장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개발 및 검사

제27조(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개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하려는 항로표지 장비·용

----- 않도록 -----
----- 해야 -----.

⑤ -----

----- 통지해야 -----
-----.

제26조(원상복구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야 -----
-----.

제6장 항로표지

장비·용품등의 개발 및 검사

제27조(항로표지 장비·용품등의 연구·개발 등) ① -----

장비·용품등을 연구·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항로표지 장비·

품의 기능과 규격, 개발 절차 및 개발 후의 혜택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기능 및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경우 해당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검사 대상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 장비·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용품을 말한다.

1. 2. (생략)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전검사: 제조하거나 수입

용품 등-----
----- 공고해야
-----.

② -----
----- 장비·
용품 등-----

----- 고시해야 ----
--.

③ -----

----- 장비·용품등의 -----

장비·용품등을 지정하여 공고
해야 --.

제28조(항로표지 장비·용품등의 검사 대상 등) ① -----

----- 장비·용품 등-----

--.

1. 2. (현행과 같음)

② -----

--.

1. -----

한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사
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2. 정기검사: 사용 중인 항로표
지 장비·용품에 대하여 정기
적으로 받는 검사

3. 변경검사: 제1호 또는 제2호
에 따른 검사를 받은 항로표
지 장비·용품을 개조하거나
수리하여 기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항로표지 장비·용품
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항
로표지 장비·용품에 대한 검사
항목 및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2.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 장비
·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
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의 절차 등) ① 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

----- 장비·용품등-----

2. -----

-- 장비·용품등이 -----

3. -----

-- 장비·용품등을 개조----

----- 장비·용품
등을 사용하기 -----

③ -----

---- 장비·용품등-----

-----.

1.·2. (현행과 같음)

④ -----

----- 장비

·용품등-----

----- 필요한 -----

-----.

제29조(항로표지 장비·용품등 검
사의 절차 등) ① -----
----- 장비·용품등
의 -----

1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등 검사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
 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
 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
 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
 행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
 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
 지 장비·용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
 표지 장비·용품 검사결과서에
 적어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항로표지
장비·용품에 대해서는 해양수
 산부장관이 정하는 합격증표를
 붙여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0조(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 장비·용품
등 검사신청서-----

----- 제출
해야 ----. 다만,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
부터 검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

 -- 장비·용품등을 -----

 --- 장비·용품등 검사결과서-

 ---.

③ -----

장비·용품등-----

 ---.

제30조(항로표지 장비·용품등 검

의 유효기간)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한 항로표지 장비·용품에 대해서는 그 정기검사의 신청 및 실시를 위하여 종전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2. (생 략)

제31조(검사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와 항로표지 장비

사의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장비·용품등-----

-----.

③ ----- 계산한다.

1.·2. (현행과 같음)

제31조(검사대행기관의 지정) ①

장비·용품등 -----

제출해야 -----. -----

· 용품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검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

-----해야-----
-----않는-----

-----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② -----

-----고시해야-----
-----.

1.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사전통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재지정을 받으려면 지정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지정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정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생략)

제3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검사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4조(검사대행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의 대행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

----- 신청해야 -----
-- . ----- 재지정은 -----
-----.

제32조(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사전통지) ① -----
----- 검사대행기관이 -----

-- 해야 -----

-----.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

----- 국유재산-----

----- 체결해야 -----
-----.

제34조(검사대행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등) ① -----

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
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를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를
받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제35조(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항로
표지 장비·용품 검사업무 실적
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
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
만,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한 항로표지 장
비·용품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
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신설>

----- 장비·용품등 -----

----- 제출해야 -----
--.

② -----

----- 고시
해야 ----.

제35조(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지 제26호서식-----
--- 장비·용품등 -----

-----.

----- 장
비·용품등-----

----- 것으로 검사업무 실적
보서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제6장의2 항로표지

<신 설>

<신 설>

지능정보화의 촉진

제35조의2(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①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항로표지기반 정보제공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정보제공 여부 및 정보제공 조건, 제공 기간, 수수료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의3(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 지정·운영) ① 법 제43조의3제5항의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둔다

② 법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센터는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가공·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항로표지기반 정보에 관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

제36조(항로표지 등의 보존·관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항로표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이하 “보존물”이라 한다)를 원형대로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로표지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항로표지와 관련한 등대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에 전시하기 위하여 보존물을 철거·이설·개수·보수·대여하는 등 그 현황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보존물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

다.

③ 센터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6조(항로표지 등의 보존·관리) ① -----

보존해야 -----
----- 수립·시행해야 -----
--.

② -----

----- 철거·이설(移設)·개수·보수·대여하는 -----

----- 보고해야 -----.

③ -----

화재로 지정받거나 등록된 경우
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7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
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6조제3
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
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
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 5.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
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

----- 보고
해야 ----.

제37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
관의 지정 등) ① -----

----- 제출해야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확인해야 -----

----- 않는 경우에는 신청
인으로 하여금 ----- 해야 한
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출해야 -----.

1. (현행과 같음)

2. ----- 기록 사항이 -----
----- 기록
사항의 -----

제40조(수수료) ① -----

--- 장비·용품등 검사에 필요
한 -----

-----.

② _____

_____.

_____ 납부해야 _____
_____.

③ _____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금액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승인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수료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신 설>

----- 게시해야 ----
-- . -----

-----.

④ -----

-- 해야 ----.

⑤ -----

----- 승인해야 ----
--.

⑥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다만, 해당 정보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u>영 제22조제1항제1호, 제13호, 제22호 및 제29호</u>에서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특수항로표지를 말한다. ② (생략)	<u>다.</u>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u>영 제22조제1항제1호</u>----- ----- ----- ----- -----. ② (현행과 같음)
---	--